

변경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국채 10년 인덱스 증권투자신탁[채권]
2. 효력발생일 : 2023년 6월 9일
3. 정정사유 : 클래스 C-P2I(퇴직연금) 추가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신설>	<u>Class C-P2I(퇴직연금) : E3803</u>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신설>	④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u>Class C-P2I(퇴직연금) 수익증권: 최초 가입시 20억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u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~15. (생략)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」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~15. (현행과 동일) <u>16. Class C-P2I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
제24조의 2(수익증권의 판매기준)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~15. (생략) <신설>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 1~15. (현행과 동일) <u>16. Class C-P2I(퇴직연금): 최초 가입시 20억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u>
제39조(보수)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

	<p>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생략) <신설></p>	<p>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(현행과 동일) <u>Class C-P2I(퇴직연금) 수익증권</u> 1.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(1)</u> 2. <u>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(0.84)</u> 3. <u>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(0.1)</u> 4. <u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(0.1)</u></p>
<p>제40조(판매수수료)</p>	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 1~15. (생략) <신설></p>	<p>③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다음 각호의 종류별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수익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 1~15. (현행과 동일) 16. <u>Class C-P2I(퇴직연금) : 해당사항 없음</u></p>
<p>부칙</p>	<p>-</p>	<p>부 칙 <u>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변경대비표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국채 10년 인덱스 증권투자신탁[채권]
2. 효력발생일 : 2023년 6월 9일
3. 정정사유 : 클래스 C-P2I(퇴직연금) 추가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(공통)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펀드코드	<신설>	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형 명칭):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고액)(C-P2I(퇴직연금)) 펀드코드: E3803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(2) 종류형 구조 <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> <신설>	(2) 종류형 구조 <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>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고액) (C-P2I(퇴직연금)): 최초 가입시 20억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기준	가. 매입 (3) 종류별 모집제한 <신설>	가. 매입 (3) 종류별 모집제한 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고액) (C-P2I(퇴직연금)): 최초 가입시 20억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<신설>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-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고액) (C-P2I(퇴직연금)): 최초 가입시 20억원 이상 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	<p><신설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</p>	<p>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고액) (C-P2I(퇴직연금))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고액) (C-P2I(퇴직연금))</u></p> <p><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</p> <p>클래스 추가에 따른 수수료, 보수 및 비용 추가</p>
<p>제4부. 1. 집합투자 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-</p>	<p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</p>

변경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국채 10년 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[채권]
2. 효력발생일 : 2023년 6월 9일
3. 정정사유 : 클래스 C-P2I(퇴직연금) 추가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(공통)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펀드코드	<신설>	<u>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(고액) (C-P2I(퇴직연금))</u>
<요약정보> 운용전문인력	-	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